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21
----------	------

2020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용석 의원 외 9명
- 나. 제안일 : 2020년 10월 5일
- 다. 회부일 : 2020년 10월 16일
- 라. 상정일 :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용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대학 학생들은 현 조례상 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 장학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 학생들이 장학금 지급 및 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시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및 선정대상에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전공대학 학생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0.10.29. ~ 11.5.)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대학 학생들은 현 조례상 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전공대학의 재학생이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및 선정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가. (현행과 같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현행과 같음)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u>학교</u>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u>학교와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u>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전공대학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며, 「평생교육법」은 이러한 학교를 ‘전공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초·중등교육법」 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 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장학재단은 서울시 소재 전공대학은 3개교(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재학생 수는 총 11,124명(2019년 기준)으로 이중 소득구간* 4구간 이하 인원은 3,523명이며, 약 30%가 저소득 학생으로, 장학금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음.

※ 소득구간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과 재산 조사로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값.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각종 사회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복지업무 정보시스템

〈 ‘소득구간’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단위:만원)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학기 최대지원액	260	260	260	260	195	184	184	60	33
연간 최대지원액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

출처 : 한국장학재단

〈 2020년 전공대학 현황 〉

분류	백석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총장 윤미란)	백산학원(총장 강일모)	정화예술대학(총장 허영무)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강남구 논현동	중구 퇴계로
전공과목	음악학부 공연예술학부 디자인미술학부 영상학부 외식산업학부 항공서비스학부 언어문화학부 경영행정학부 사회복지학부	스튜디오작곡과 실용음악과 뮤지컬과 연기예술과 공연기획과 무대예술과 뷰티아트과	미용예술학부 영상미디어학부 공연예술학부 실용음악학부 항공호텔관광학부 호텔조리 디저트학부 사회복지학부

출처 : 서울장학재단 제출자료

-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서울장학재단의 설립목적 그리고 서울장학재단에서 제출한 전공대학의 재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장학사업 대상의 범위를 전공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장학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비교해 보면,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① 전공대학, ②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③ 외국 대학(대학원포함)의 학생은 서울장학재단의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서울장학재단의 장학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한국장학재단의 장학대상에 포함된 학교

① 전공대학: 정화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 본 개정안의 대상.

②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영남사이버대학교(경북경산), 세계사이버대학(경기광주)

③ 외국의 대학(대학원 포함)

- 전공대학은 본 개정안의 대상이며, 서울시 소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공대학과 외국 대학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장학대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외국 대학(대학원 포함)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수인재 발굴과 양성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장학대상의 발굴과 효과적 전달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21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 김용석, 고병국, 문영민,
김상훈, 김평남, 김상진,
신정호, 김제리, 김태호,
이현찬 의원(10명)

1. 제안이유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전공대학 학생들은 현 조례상 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 장학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 학생들이 장학금 지급 및 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및 선정대상에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전공 대학 학생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학교”를 “학교와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u>학교</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생 략)</p> <p>2. (생 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 <u>학교</u> <u>와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51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510,000천원으로 연평균 102,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전공대학 학생의 장학금 선발인원, 장학금 지원 금액 및 회수는 서울장학재단 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 ※ 전공대학과 재학생 수가 유사한 타 대학의 2020년 장학생(서울희망대학 장학금)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평균으로 전제하여 추계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510,000천원
 - 총비용 = 전공대학 학생 장학금 비용
 - = 51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소계 (a)	-	-	-	-	-	-
세출	전공대학 학생 장학금 비용 (제2조 제1호)	102,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510,000
	소계 (b)	102,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510,000
	총비용(b-a)	102,000	102,000	102,000	102,000	102,000	510,000

$$\bigcirc \text{전공대학 학생 장학금 비용} = \sum_{i=1}^5 (\text{연간전공대학학생장학금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전공대학 학생 장학금 ≙ 102,000천원
- ≙ 2,000천원 × 51명
- ≙ 장학금 지원 금액 × 선발인원

※ 전공대학 학생의 장학금 비용은 전공대학과 재학생 수가 유사한 타 대학의 2020년 장학생(서울 희망 대학 장학금)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평균으로 전제하여 추계

- 장학금 지원 금액(2,000천원) : 학기당 최대 1,000천원, 연간 최대 2,000천원
- 선발인원(51명) : 재학생 수가 유사한 타 대학의 장학금 선발인원의 평균

전공대학	학교 *전공대학과 재학생 수가 유사한 대학	재학생 수 (명)	2020년 대학장학금 선발인원 (명)	평균 선발 인원 (명)	2021년 전공대학 장학금 예산금액	산출내역
국제 예술대학교 (672명)	서울기독대학교	537	2	6	12,000천원	2,000천원*6명 (1,2학기)
	서울한영대학교	675	8			
	삼육보건대학교	1,033	10			
정화 예술대학교 (3,162명)	인천재능대학교	3,260	11	12	24,000천원	2,000천원*12명 (1,2학기)
	안산대학교	3,921	11			
	경북대학교	5,101	15			
백석 예술대학교 (7,290명)	광운대학교	6,704	28	33	66,000천원	2,000천원*33명 (1,2학기)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7,300	34			
	숙명여자대학교	8,927	37			
2021년 전공대학 장학금 예산 총계				51	102,000천원	2,000천원*51명 (1,2학기)

자료 : 서울장학재단

[참고1] 전공대학 현황

(2020.6월 기준/ 단위: 명, 원)

구분	대학명	재학생 수	평균등록금액
1	국제예술대학교	672	4,095,000
2	정화예술대학교	3,162	3,977,500
3	백석예술대학교	7,290	3,605,000

자료 : 서울장학재단

[참고2] 서울희망대학장학금 개요

- 2020년 예산: 3,990,000천원
- 선 발 인 원: 총 2,600명 선발 / 229개 학교
- 지 원 성 격: 저소득가정 학생의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지 원 자 격: 서울소재 대학 및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정규학기 학부생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득구간 1~4구간이내
- 지 원 금 액: 연간 최대 200만원 (학기당 최대 100만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